



뉴욕주
법무장관실

Letitia James | 법무장관



뉴욕 주지사
사무실

Kathy Hochul | 주지사



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Knowledge > Skill > Opportunity

Betty A. Rosa | 교육청장

이민자 학생의 권리 보호에 관한 뉴욕주 지침

2025년 1월

뉴욕주 법무장관실(OAG), Kathy Hochul 뉴욕 주지사 사무실, 뉴욕주 교육청(SED)은 모든 비(非)시민권자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왔습니다. 관계 당국은 이전에 뉴욕의 이민자 학생들이 교육 및 기타 공공 서비스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주제에 대한 지침을 학군과 주 기관에 발행했습니다.¹ 최근 우리 지역사회에서 연방 이민 조치의 증가 위협을 고려해 볼 때, 학교는 모든 학생들을 환영하고 무료 공교육을 제공하는 안전한 피난처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하고자 이 서신을 보냅니다.

이 지침은 주 및 연방법에 따른 학군의 의무와 관련하여 학군을 위한 관련 자료를 강조하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이 지침은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정책을 다루지는 않지만, 학군은 운영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규정 준수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 SED 및 OAG에 문의할 것을 권장합니다.²

I. 입학 및 등록 요건

뉴욕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지 못한 5세에서 21세 사이의 모든 아동은 자신이 거주하는 학군에서 무료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³ 학군은 출신 국가, 이민 신분, 인종, 언어 능력 및 기타 이유로 입학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⁴ 미국 대법원도 학생이나 부모 또는 후견인의 이민 신분을 이유로 무료 공교육을 거부할 수 없다고 오랫동안 판결해 왔습니다.⁵ 교육에 대한 동등한 이용을 방해하는 학교 정책은 학군을 법적 책임에 노출시키고 학교 공동체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뉴욕 학교에서 환영받을 수 있도록, 학군이 입학에 차별적인 장벽을 세우거나 이민자 학생의 등록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바입니다.⁶ 따라서 학교는 학군 내 다양한 거주 증명을 고려하고 인정되는 서류의 예시 목록을 공개해야 합니다.⁷ 또한 학교는 입학 시 사회보장카드나 번호 또는 이민 신분을 드러내는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⁸ 그리고 학교는 거주 증명, 예방 접종, 학교 기록 또는 일반적으로 등록에 필요한 기타 서류가 부족한 경우일지라도 이민자 및 무주택 학생을 즉시 입학시켜야 합니다.⁹ 입학 및 등록과 관련된 주 및 연방 의무에 대한 추가 지침은 2023 공동 입학 지침(Joint Enrollment Guidance)을 참조하기 바랍니다.¹⁰

그에 더하여, 연방 McKinney-Vento 노숙자 지원법(Homeless Assistance Act)과 뉴욕 교육법 및 시행 규정은 학군이 노숙을 하고 있거나 이민자 쉼터를 포함한 임시 주택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할 적극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¹¹ 2021 공동 McKinney-Vento 지침은 학군이 노숙을 하는 학생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법적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¹² 이 지침은 그러한 학생들이 같은 학군

내에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출신 지역이나 현재 거주지의 학교에 즉시 입학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합니다.¹³ 학교는 도움이 필요한 노숙 아동 및 청소년을 파악하기 위한 원조 활동을 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학생의 임시 주거지를 오가는 교통편을 제공해야 합니다.¹⁴ McKinney-Vento 법 시행 및 노숙 학생 지원에 관한 추가 자료는 뉴욕주 노숙 학생을 위한 기술 및 교육 지원 센터(New York State Technical and Education Assistance Center for Homeless Students, NYS-TEACHS)에 문의 바랍니다.¹⁵

II. 학생 정보 수집 및 학생 기록 접근

연방법과 주법, 주로 1974년 가족 교육 및 개인정보 보호 권리법(Family Education and Privacy Rights Act, FERPA)은 일반적으로 부모의 동의 없이는 개인 식별 정보(PII)의 공개를 금지합니다.¹⁶ 여기서 적용되는 바와 같이, 학교는 디렉토리 정보를 구성하거나 "사법 명령 또는 합법적으로 발부된 소환장"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에만 PII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¹⁷ 디렉토리 정보에는 학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¹⁸ 이민 신분, 시민권 또는 출신 국가 정보나 서류는 포함되지 않으며, 학교는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러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프로그램 참여 또는 보고 요건에 그러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입학 절차 후에 수집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익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법 명령 또는 합법적으로 발부된 소환장에 대한 상기 예외 사항에 따라,¹⁹ 학교는 연방 또는 지역 법 집행 공무원에게 학생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²⁰

또한 FERPA는 학교 전담 경찰(School Resource Officers, SRO)이 학교 관계자로 간주되는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학부모, 후견인 또는 미성년자가 아닌 학생의 사전 동의 없이 학생의 이민 신분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기록을 SRO에게 공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²¹ 그러한 경우라도 SRO는 해당 정보가 요구되는 합법적인 교육 목적, 즉 학교의 안전과 학생의 신체 보안을 증진하기 위해서만 교육 기록의 PI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이민 신분 정보가 학교의 안전 목표나 합법적인 교육 목적과 무관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SRO는 학생의 학교 기록에서 이민 신분 정보를 조사해서는 안 됩니다.²² 또한 SRO가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교육 기록에서 PII의 공개 및 재공개에 대한 FERPA의 제한을 위반하게 될 수 있습니다.²³

연방 또는 지역 법 집행관이 학생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대신 해당 요청의 근거가 되는 소환장이나 기타 문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를 접수한 학교는 학생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변호사와 연락해야 합니다.²⁴ 학교는 이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 SED의 개인정보 보호 사무소에 알려야 합니다.²⁵

추가로, 학군에서 다음과 같이 하도록 권합니다:

- » 학군의 디렉토리 정보 정책을 검토하여 학생의 이민 신분을 부주의하게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여기에는 출생지, 국적 또는 여권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²⁶ 또한 디렉토리 정보 예외는 허용되나, "공개될 경우 일반적으로 유해하거나 사생활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 정보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²⁷ 학군은 교육 기관이 "특정 당사자에게나 특정 목적으로만, 또는 둘 다에 대해서 디렉토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제한적 디렉토리 정보 정책을 시행하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²⁸ 그에 더하여, 학부모와 학생은 학교에 디렉토리 정보 거부(opt-out) 양식을 요청하여 디렉토리 정보 공개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²⁹
- » 가능하다면 학부모와 후견인(있는 경우)에게 학군 디렉토리 정보 정책을 거부할 권리를 알리는 학군의 연례 FERPA 통지서를 학군 내 학생의 주요 모국어로 번역하여 재발행합니다.³⁰
- » 연방 또는 지역 법 집행관이 자녀의 정보를 요청한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있는 경우)에게 즉시 알립니다.³¹ 그리고
- » 현재 수집된 정보를 검토하여 해당 정보가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이민 신분을 불필요하게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정보 수집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법에 따라 학생과 가족은 SED의 개인정보 보호 사무소에 PII의 무단 공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³²

III. 법 집행 기관의 구금, 심문 또는 학교 시설에서 학생의 퇴거

뉴욕 교육법, 뉴욕 가정법원법, 미국 대법원의 *Plyler v. Doe*(플라일러 대 도) 판결을 비롯한 다양한 연방법 및 주법은 학교 구내에서 학생의 구금, 심문 및 퇴거와 관련하여 학군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학군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관은 법 집행관이 학생에게 접근하려는 경우 따라야 할 법적 의무와 절차와 관련하여 학군에 주어진 2017년 및 2019년 공동 이민 교육 지침을 반복하여 명확히 합니다.³³

우선,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 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의 없이는 법 집행관이 학교 시설 내에서 학생을 퇴거시키거나 심문할 수 없다는 SED의 오랜 입장을 재확인하는 바입니다. 단, 아래에 설명된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예외가 적용됩니다.³⁴ 또한, 뉴욕주 행정명령 170.1에 따르면, 연방 이민 당국이 학교와 같은 주(州) 시설 내에서 민사 체포를 집행하려면, 해당 시설 내의 절차와 관련된 체포가 아닌 이상, 사법 영장이나 구금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³⁵ 연방 또는 지역 법 집행관(SRO 포함)으로부터 학생의 구금 또는 심문 요청을 받는 경우, 교직원들은 모든 학생의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1) 긴급한 안전 상황을 해결하거나 사법 영장 또는 명령에 따라 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구내에서 법 집행관이 학생에게 접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2) 법 집행관이 제시할 수 있는 문서의 형태는 다양하며, 모든 문서가 기록을 넘기거나 학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기에 충분한 법적 근거가 되지는 않음을 명심하십시오. 법 집행관에게 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 a. 사법 영장 또는 명령(Judicial warrant or order): 사법 영장 또는 명령은 미국 지방법원 판사 또는 연방 치안 판사가 서명하며, 개인이 범죄나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음을 입증합니다.
 - b. 행정 영장(Administrative warrant): 행정 영장은 연방 이민 당국이 작성하고 발부하며, 연방 공무원에게 추방 또는 추방 절차를 위해 비시민권자를 체포하도록 지시합니다.³⁶ 이는 사법 영장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기에 개인이 범죄나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³⁷
 - c. 이민 구금 요청(Immigration “detainer”): 이민 구금 요청은 일반적으로 연방 이민 당국이 지역 법 집행 기관에 발부하는 요청으로, 개인을 예정된 석방 시간 이후 최대 48시간 동안 추가 구금하도록 요청합니다. 이 요청은 연방 당국이 민사 이민 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개인을 구금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추가 시간을 제공합니다.³⁸
- (3) 다른 조치를 취하기 전에 교육감과 학군 변호사에게 해당 문서를 제공하여 법 집행 요청의 맥락에서 평가하도록 하고, 지침을 받을 때까지 대기하십시오.
- (4) 특별히 금지된 경우(예를 들어, 사법 명령 등)가 아니라면, 즉시 학생의 부모 또는 후견인(있는 경우)에게 알립니다.

또한 2019 공동 이민 교육 지침은 SRO가 불법 체류 학생이 이민 문제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학교에 다닐 권리를 옹호하도록 학군이 보장할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³⁹ SRO는 이민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을 구금하거나 심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학군에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수정헌법 제4조(Fourth Amendment)는 학생이 학교 정책을 위반했거나 "학교 안전의 특별한 필요"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한, SRO가 학생을 구금하거나 심문하는 것을 금지합니다.⁴⁰ 이러한 조치는 학교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만 하며, 의심되는 정책 위반 또는 불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서만 수행되어야 합니다.⁴¹ 학생의 이민 신분은 학교 안전이나 학교 정책과는 무관하며 학교에서의 구금이나 심문을 결코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⁴²

실제로 이러한 불법 관행이 학생의 인종, 민족, 출신 국가,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에 대한 인식에 근거하여 일어나는 경우, 주 헌법과 여러 주 및 연방 시민권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⁴³ SRO가 이러한 법적 보호를 위반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학군은 학교 내 SRO를 적절히 교육 및 감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⁴⁴

뉴욕 교육법에 따라 SRO를 고용하는 학군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서면 계약 또는 양해각서(MOU)를 통해 이들의 역할과 책임 영역을 공식적으로 정의해야 합니다.⁴⁵ 우리 사무실은 학군에 불법 체류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SRO와의 계약 또는 양해각서에 포함하도록 권고합니다.⁴⁶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1) 학생의 이민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학생 기록에 대한 SRO의 접근 및 재공개 자격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된 제한 사항. 여기에는 SRO가 학생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학교 관계자”인지 여부가 포함됩니다.
- (2) SRO가 학생 및 학생의 가족에게 이민 신분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
- (3) 법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한, 학생이나 그 가족의 실제 또는 인지된 이민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민 당국과 공유하지 않겠다는 SRO 및 학교 직원의 서약서.⁴⁷
- (4) 법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한, SRO가 이민 당국의 요청에 따라 학생을 구금하거나, 민사 이민 영장에 따라 체포하거나, 이민 당국의 통지 또는 이송 요청에 응하거나, 기타 이민 집행 목적으로 캠퍼스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 그리고
- (5) 모든 SRO는 앞의 보호 조치를 이탈하기 전에 교육감 또는 기타 지정된 학교 책임자와 상의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

IV. 괴롭힘 및 희롱

뉴욕 및 연방법은 학생이나 직원에 의한 실제 또는 인지된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민족 집단,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을 이유로 하는 괴롭힘과 희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⁴⁸ 모든 학생의 존엄성 법(Dignity for All Students Act)에 대한 우리 기관의 사전 지침과 자료를 참조하여 괴롭힘과 희롱이 없는 학교 환경을 조성해야 할 법적 의무를 이해하도록 학군에 권장합니다.⁴⁹ 이러한 의무에는 그러한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개발, 학군 정책에 대한 직원 교육 및 학군 행동 강령으로의 해당 정책 통합, 학생들에게 괴롭힘, 희롱 및 차별 금지 교육을 제공, SED에 사건 보고가 포함됩니다.⁵⁰

또한, 뉴욕주 법은 개인의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혈통, 성별, 종교, 연령, 장애,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해당 개인이나 그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위협 또는 희롱을 금지합니다.⁵¹ OAG 증오 범죄 및 편견 예방 부서(Hate Crimes and Bias Prevention Unit)는 해당 법 위반에 대한 비(非)범죄 조사를 시작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를 학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⁵²

V. 학생 가족 구성원의 구금 또는 추방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학생에게는 구금 또는 추방된 부모, 후견인 또는 기타 가족 구성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군은 모든 학생과 그 가족이 보조 비상 연락처를 포함하여 업데이트된 비상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이민법 집행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부양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학군은 또한 부록에 제공된 정보를 포함하여 관련 법률 및 지역사회 자료에 대한 정보를 학생 및 그 가족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VI. 부록: 자료

학생과 가족을 위한 주지사 사무실 자료:

- » 뉴욕 이주지원국(Office of New Americans)은 주 전역의 커뮤니티 기반 제공자 네트워크를 통해 이민자들이 무료 서비스 및 지원을 이용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알아 보려면, <https://dos.ny.gov/office-new-americans>를 방문하세요.
- » 노숙 학생을 위한 자료는 뉴욕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의 가출 및 노숙 청소년(Runaway and Homeless Youth) 프로그램을 방문해 보세요: <https://ocfs.ny.gov/programs/youth/rhy>.
- »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성적 지향 또는 기타 보호 대상 분류에 따른 차별을 겪는 학생과 성인을 위한 자료는 뉴욕주 인권부(Division of Human Rights)를 방문하세요: <https://dhr.ny.gov/complaint>.

뉴욕주 교육부 자료:

- » 주(州) 교육부의 개인정보 보호 사무소 연락하세요:
 - » 주소: 89 Washington Avenue, EB 152, Albany, NY, 12234
 - » 전화: 518-474-0937
 - » 이메일: Privacy@nysed.gov
- »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학생의 개인 식별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했거나 이에 접근했다고 주장하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제출하려면, 뉴욕주 교육부의 학부모 및 학생 개인정보 침해 신고 페이지 <https://www.nysed.gov/data-privacy-security/parents-and-students-file-privacy-complaint>를 방문하세요.
- » 본 지침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NYSED 자문실에 연락하세요:
 - » 전화: 518-474-6400
 - » 이메일: legal@nysed.gov

뉴욕주 법무장관실 자료:

- » 뉴욕주 법무장관실에 시민 평등권과 관련된 불만을 제기하려면, <https://ag.ny.gov/file-complaint/civil-rights>를 방문하세요.
- » 뉴욕주 법무장관실에 증오 범죄와 관련된 불만을 제기하려면, <https://ag.ny.gov/publications/hate-crimes>를 방문하세요.
- » 이민 관련 절차를 위한 변호사 또는 공인 대리인에 대한 정보와 이민 서비스 사기를 피하는 방법에 대한 자료는 뉴욕주 법무장관실, 나의 권리 알기(Know Your Rights)를 참조하세요: 이민 서비스 사기, <https://ag.ny.gov/publications/immigration-services-fraud>.
- » 본 지침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뉴욕주 법무장관실 민권국에 문의하세요:
 - » 이메일: civil.rights@ag.ny.gov

1. OAG 및 SED가 발행한 관련 이민 교육 지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OAG 및 SED, “Dear Colleague(동료 여러분께)” 서신 (2017.02.27), <https://www.nysed.gov/sites/default/files/oag-sed-letter-ice-2-27-17.pdf> (“2017 Joint Immigration Education Guidance(공동 이민 교육 지침)”; OAG 및 SED, “Dear Colleague” 서신 (2019.08.29), https://ag.ny.gov/sites/default/files/joint_oag-sed_-_ice_sros_in_schools_w_ag_signature.pdf (“2019 Joint Immigration Education Guidance”); OAG 및 SED, “Dear Colleague” 서신 (2021.02.16), <https://www.nysed.gov/sites/default/files/programs/coronavirus/mckinney-vento-guidance.pdf> (“2021 Joint McKinney-Vento Guidance(공동 McKinney-Vento 지침)”; OAG 및 SED, Know Your Rights(나의 권리 알기) 및 “Dear Colleague” 서신 (2023.08.28), <https://ag.ny.gov/sites/default/files/letters/kyr-ed.pdf> (“2023 Joint Enrollment Guidance(공동 입학 지침)”; 보고서, Jhone M. Ebert가 학군 교육감 등에게 발송, re: 최근 이민 관련 조치에 따른 괴롭힘, 따돌림 및 차별 대응을 위한 가용 지침 및 자료에 관한 내용, SED, 2017년 2월 27일, <https://www.pl2.nysed.gov/dignityact/documents/dasa-guidance> (“2017 DASA Memo”). 또한 SED 자문실, Statement on Rights of Newly Arrived Immigrants(신규 이민자의 권리에 대한 성명) (2023.08.15) 참조, <https://www.nysed.gov/sites/default/files/programs/bilingual-ed/8-14-23-oc-ltr-re-new-arrivals-a.pdf>.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제6호, 2021년 10월 8일, 기존 2017년 9월 15일에 발행된 행정명령 170 (E.O. 170)의 연장, <https://www.governor.ny.gov/executive-order/no-6-continuation-and-expiration-prior-executive-orders> 및 N.Y. Comp. Codes R. & Regs. (N.Y.C.R.R.), tit. 9, § 8.170. E.O. 170은 공공 혜택 자격 판단에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 집행관을 포함한 주 공무원과 직원이 개인의 이민 신분을 문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E.O. 170은 또한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한 법 집행관을 포함한 주 공무원과 직원이 연방 이민 당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OAG 및 SED 연락처 정보는 부록을 참조.
3. N.Y. Educ. Law § 3201-02, 3209; N.Y. Exec. Law § 296(4).
4. N.Y. Exec. Law § 296(4); 2023 Joint Enrollment Guidance, 앞서 언급한 주석 1; 또한 8 N.Y.C.R.R. 154-2.1(a) (“각 학교는 학군이 제공하는 모든 학교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영어 학습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참조.
5. Plyler v. Doe, 457 U.S. 202 (1982); 또한 Hisp. Int. Coal. v. Governor of Ala., 691 F.3d 1236, 1247 (11th Cir. 2012) (“불법 체류 아동이 학교에 등록하고 다니는 것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외형상 중립적 정책을 위헌으로 판시함.) (Plyler, 462 U.S. 인용) 참조.
6. 2023 Joint Enrollment Guidance, 앞서 언급한 주석 1. 7. Id.; 8 N.Y.C.R.R. § 100.2(y).
8. 8 N.Y.C.R.R. § 100.2(y)(3)(i)(a). 학군이 주 또는 연방 요건에 따라 이민 신분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등록 결정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하여 학생이 등록한 후에 수집해야 한다. 2023 Joint Enrollment Guidance, 1-2의 앞서 언급한 주석 1.
9. 2023 Joint Enrollment Guidance, 앞서 언급한 주석 1: 42 U.S.C. § 11432(g)(3)(C)(i); N.Y. Educ. Law § 3209(2)(f)(2). 등록을 유지하려면, 모든 학생은 등록 후 14일 이내에 모든 필수 백신을 최소 1차 접종해야 한다. 뉴욕주 보건부, School Vaccination Requirements(학교 예방접종 요건) (2023년 8월 개정), https://www.health.ny.gov/prevention/immunization/schools/school_vaccines. 노숙 또는 주거 불안정을 겪고 있는 아동이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하는 경우... 등록 학교는 즉시 해당 아동 또는 청소년의 부모나 보호자 혹은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의 경우) 해당 청소년을 지역 교육기관 연락 담당자에게 연결해야 하며... 담당자는 필요한 예방 접종 또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42 U.S.C. § 11432(g)(3)(C)(iii).
10. 2023 Joint Enrollment Guidance, 앞서 언급한 주석 1.
11. 42 U.S.C. § 11431 이하 참조; N.Y. Educ. Law § 3209 이하 참조
12. 2021 Joint McKinney-Vento Guidance, 앞서 언급한 주석 1.
13. Id.
14. 42 U.S.C. § 11432(e)(3)(E)(i)(III), (g)(6)(A)(i); N.Y. Educ. Law § 3209(4)(c); 8 N.Y.C.R.R. § 100.2(x)(7)(iii)(a)(2).
15. 노숙 학생을 위한 뉴욕주 기술 및 교육 지원 센터(New York State Technical and Educational Assistance Center for Homeless Students, NYS-TEACHS), www.nysteachs.org; NYS-TEACHS 상담 전화: 1-800-388-2014.
16. 20 U.S.C. § 1232g; 34 C.F.R. § 99; N.Y. Educ. Law § 2-d; 8 N.Y.C.R.R. Part 121, § 200.5(e)(2); N.Y. Gen. Mun. Law § 805-a (시 공무원과 직원이 “[자신의] 공식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 정보의 공개”를 금지한다.). 기밀 정보의 공개도 삭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ppeal of Nelson, 49 Ed. Dept. Rep., Decision No. 15,964 (Aug. 14, 2009), <https://www.counsel.nysed.gov/Decisions/volume49/d15964>; Appeals of Ziegelbauer, 62 Ed. Dept. Rep., Decision No. 18,143 (Jul. 7, 2022), <https://www.counsel.nysed.gov/Decisions/volume62/d18143>. Cf. 8 U.S.C. § 1373 (공무원은 정부 기관이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에 관한 정보를 공유, 유지 또는 교환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지만, 그러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 또는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참조.
17. 일반적으로 34 C.F.R. § 99.31 참조.
18. 보고서, Louise DeCandia가 학군 교육감 등에게 발송 re: Directory Information, SED, 2023년 6월 7일, <https://www.nysed.gov/sites/default/files/programs/data-privacy-security/directory-guidance-final-june-2023.pdf> (“DeCandia Memorandum”).
19. 2017 공동 이민 교육 지침(앞서 언급한 주석 1)에 설명된 바와 같이, FERPA 비공개 규칙에는 법 시행규정에 명시된 대로 제한적인 예외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예외에는 연방 정부가 특정 명시하는 인물의 요청이 포함되지만, “연방 또는 주 지원 교육 프로그램의 감사 또는 평가와 관련되거나,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방 법률 요건의 집행 또는 준수를 위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모든 PII는 “추가 공개 또는 기타 사용으로부터”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34 C.F.R. § 99.35(a). 더 나아가, 교육 기록에서 학생 PII에 접근하라는 ICE 또는 기타 연방 이민국 공무원의 요청은, 학부모 또는 적격 학생이 제3자 공개에 동의해야 한다는 일반 규칙에 대한 FERPA의 예외를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0. 섹션 III에 설명한 대로, 학교 관계자는 연방 및 지역 법 집행관이 심문을 위해 학생을 학교 환경에서 퇴거시키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SRO를 고용하는 카운티와 ICE 간에 공식 협약이 체결되어 합법적으로 권한이 부여되는 극히 제한적이고 드문 상황이 아니라면, SRO는 연방 법 집행관의 이민 집행을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21. 2019 Joint Immigration Education Guidance, *앞서 언급한* 주석 I; 20 U.S.C. §§ 1232g(b)(2)(A), 1232g(d); 34 C.F.R. §§ 99.30, 99.31(a)(1)(i); U.S. Dep't of Educ., Privacy Technical Assistance Center, *School Resources Officers, School Law Enforcement Units*, 및 *the 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ivacy Act (FERPA)*, 11-12의 질문 15, https://studentprivacy.ed.gov/sites/default/files/resource_document/file/SRO_FAQs.pdf("SRO 및 FERPA").
22. *Id.*
23. 34 C.F.R. §§ 99.31(a)(1)(i); 99.33; 2019 Joint Immigration Education Guidance, *앞서 언급한* 주석 I; SRO 및 FERPA, *앞서 언급한* 주석 21.
24. 2017 및 2019 Joint Immigration Education Guidance, *앞서 언급한* 주석 I 참조.
25. SED 개인정보 보호 사무소 연락처 정보는 부록 참조.
26. 34 C.F.R. § 99.3 "디렉토리 정보" 참조.
27. *Id.* 참조.
28. DeCandia Memorandum, *앞서 언급한* 주석 18; 34 C.F.R. § 99.37(d).
29. DeCandia Memorandum, *앞서 언급한* 주석 18.
30. 학교는 학부모에게 매년 FERPA 권리에 대한 고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고지는 학교 웹사이트에 눈에 잘 띄게 게시해야 하며, 학교의 디렉토리 정보 정책을 명시하고 학부모가 해당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2019 Joint Immigration Education Guidance, *앞서 언급한* 주석 I; DeCandia Memorandum, *앞서 언급한* 주석 18; 34 C.F.R. §§ 99.37(a), 99.7(a)(3)(iii). 또한 학교 캠퍼스에서 활동하는 개인 중에 어떤 범주가 일반적으로 학교 관계자로 간주되어 교육 기록에 대한 정당한 교육적 이해관계를 갖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34 C.F.R. § 99.7(a)(3)(iii) 참조.
31. 예를 들어, 메사추세츠 법무장관실, "Information for schools on ICE requests for access or information(ICE의 접근 또는 정보 요청에 대한 학교용 안내)," <https://www.mass.gov/info-details/information-for-schools-on-ice-requests-for-access-or-information> (최종 접속일 2024.12.22).
32. SED에 개인정보 침해 신고 제출과 관련된 정보는 부록 참조.
33. 2017 및 2019 Joint Immigration Education Guidance, *앞서 언급한* 주석 I.
34. *Id.* 참조.; SED Counsel's Opinion 67 (1952.03.07) ("경찰 당국은 학교 건물에서 아동을 면담하거나 경찰서 업무와 관련하여 학교 시설을 사용할 권한이 없으며, [교육] 위원회는 그러한 목적으로 아동을 제공할 권리가 없다. 경찰 당국은 부모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SED Counsel's Opinion 91(1959.06.17)("어떠한 종류의 법 집행관도 아동이 정상적으로 출석 중인 동안에는 부모의 허가 없이 아동을 학교 건물에서 퇴거시켜 심문할 수 없"으며 "법 집행관은 부모의 허가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을 심문할 법적 권한이 없다."); 또한 SED Counsel's Opinion (1965.02.23) 참조 ("학교는 특히 법 집행관이나 기타 제3자가 학생을 심문하거나 어떤 목적으로든 학생을 구내에서 퇴거시키는 것을 승인할 목적으로 학생에 대한 보호관리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러한 입장은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뉴욕가정법원법(New York Family Court Act, NYFCA)은 경찰관이 아동을 법 집행 기관에 연행할 때 아동의 부모 또는 아동의 보호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즉시 연락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며, 부모 또는 후견인이 출석해 있는 경우 아동의 권리를 고지하고 심문에 참석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한, 해당 아동은 심문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N.Y. Fam. Ct. Act § 305.2; Matter of Jimmy D., 15 N.Y.3d 417 (2010) 참조.
35. 행정명령 170.1, E.O. 170 수정, *앞서 언급한* 주석 I, 기존 2018년 4월 25일, 2018, 9 N.Y.C.R.R. § 8.170.1에 발표.
36. U.S. Dep't of Homeland Sec. (DHS), 샘플 양식 I-200, Warrant for Arrest of Alien(외국인 체포 영장), https://www.ice.gov/sites/default/files/documents/Document/2017/I-200_SAMPLE.PDF, 또는 DHS, 샘플 ICE 양식 I-205, Warrant of Removal/Deportation(추방 영장), https://www.ice.gov/sites/default/files/documents/Document/2017/I-205_SAMPLE.PDF. 참조
37. *Arizona v. United States*, 567 U.S. 387, 407 (2012) (citation omitted) 참조; 또한 *People ex rel. Wells v. DeMarco*, 88 N.Y.3d 518, 530-31 (2d Dep't 2018) 참조.
38. 예를 들어, DHS, 양식 I-247D, Immigration Detainer—Request for Voluntary Action(이민 구금 요청—자발적 조치 요청), <https://www.ice.gov/sites/default/files/documents/Document/2016/I-247D.PDF>. 참조 ICE가 "대상자가 추방 가능한 외국인이라는 상당한 근거가 있음"이라는 확인란을 포함하더라도, 이는 개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39. 2019 Joint Immigration Education Guidance, *앞서 언급한* 주석 I.
40. *Id.* 참조; U.S. Const. amend. IV; *In re Gregory M.*, 82 N.Y.2d 588, 594 (1993) (학생 수색 및 심문에 적용되는 낮은 수준의 "합리적 의심" 기준은 수색을 "범죄 수사 목적이 아닌 학교 보안의 특별한 필요를 위해 학교 관계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시); 또한 SED Counsel's Opinion 148 (1965.02.23) 참조 ("학교는 특히 법 집행관이나 기타 제3자가 학생을 심문하거나 어떤 목적으로든 학생을 구내에서 퇴거시키는 것을 승인할 목적으로 학생에 대한 보호관리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또한 *G.M. ex rel. B.M. v. Casaldue*, 982 F. Supp. 2d 1235, 1249-50 (D.N.M. 2013) 참조 (학교 안전을 보호하거나 학교 재산을 집행하기 위해 학교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 SRO가 학교 관계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10번째 순회 판례 수집).
41. 2019 Joint Immigration Education Guidance 참조.
42. *Id.* 참조.
43. 예를 들어, N.Y. Const. Art. I, § 11; N.Y. Exec. Law § 296(4); N.Y. Civ. Rights Law § 40-c; Title VI, Civil Rights Act of 1964, Pub. L. No. 88-3520, 78 Stat. 252 (1964) (42 U.S.C. § 2000d에 개정에 따라 성문화됨) ("Civil Rights Act") 참조.

44. 예를 들어, *Gonzalez ex rel. v. Albuquerque Pub. Schs.*, No. CIV 05-580 JB/WPL, 2006 WL 1305032, at *3 (D.N.M. 2006.01.17) 참조 (SRO가 학교 내에서 불법 체류 학생의 이민 신분에 대해 질문한 사건에서, 피고의 평등 보호 청구 기각 신청을 기각); *Benacquista v. Spratt*, 217 F. Supp. 3d 588, 601-02 (N.D.N.Y. 2016) (학군이 SRO에 대한 조치 또는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학생의 주장에 대한 기각 신청을 기각).

45. N.Y. Educ. Law § 2801-a(10).

46. New York Civil Liberties Union(뉴욕시민자유연대), *Recommendations for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Schools and Police*(학교와 경찰 간의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권장 사항)을 참조하도록 학교에 권장합니다. (2019.12.13), https://www.nyclu.org/uploads/2019/12/mou_recommendations_for_schools_and_police_0.pdf.

47. 학군 정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정책의 어떤 내용도 8 U.S.C. § 1373에 따라 지역 기관과 지역, 주 또는 연방 기관 간에 (i) 개인의 시민권 국가에 관한 정보 또는 (ii) 개인의 이민 신분에 대한 진술을 송수신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48. Dignity for All Students Act(모든 학생의 존엄성 보장법) (“DASA”), N.Y. Educ. Law §§ 10-18, 801-a, 2801; 8 N.Y.C.R.R. § 100.2; N.Y. Exec. Law § 296(4); Title VI, Civil Rights Act, 앞서 언급한 주석 43.

이러한 보호 조치는 학교 내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행사 및 온라인 상의 사이버 괴롭힘에도 적용됩니다. N.Y. Educ. Law §§ 11-12.

49. SED, The Dignity Act Resources(존엄성 보장법 자료), <https://www.nysed.gov/student-support-services/dignity-act-resources>; 또한 2017 DASA Memo, 앞서 언급한 주석 I 참조.

50. *Id.*; N.Y. Educ. Law §§ 10-18.

51. N.Y. Civ. Rights Law § 79-n.

52. OAG Hate Crimes and Bias Prevention Unit(증오 범죄 및 편견 방지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조하세요.